

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
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84호
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
받지 못한 아동, 한부모·조손·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으로
규정되어 있어 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효과를 야기하고
있습니다.

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낙인감과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는 한편,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이용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선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.

또한, 노후화된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